

● 재정용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정용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용자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996.12.12〉
2. 삭제 〈1996.12.12〉
3. “용자”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정차관자금”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 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회계의 관리·운용등) ①이 회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6.12.12, 1999.5.24〉

②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배정하여 행한다.〈개정 1996.12.12, 1999.5.24〉

③세출예산의 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이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1996.12.12〉

제4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용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1996.12.12〉

제5조 삭제 〈1996.12.12〉

제6조 (용자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용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 예수금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대충자금의 용자원리금수입
4. 삭제 〈1999.12.31〉
5. 국공채의 원리금수입
6. 용자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수입과 이의 운용에서 생기는 제수입

②용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96.12.12〉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자대상기관에 대한 용자금
2. 다른 회계 및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의 예탁금
3. 국공채의 인수
4.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5. 재정용자채권의 원리금상환
6. 용자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7.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금

제7조 (차관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재정차관자금의 제수입
2. 다른 회계 및 이 회계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②차관계정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재정차관원리금(제부담금을 포함한다) 상환
2. 용자계정으로의 예탁금
3.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차관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제8조 (여유자금의 우선예탁등) ①특별회계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이 회계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여유자금을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

②우체국예금(1년 이상의 저축성예금에 한한다)으로 예입된 자금은 그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우체국예금중에서 이 회계에 예탁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우체국예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하도록 예산에 정한 금액은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우체국예금의 다른 운용방법에 우선하여 이 회계에 예

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⑤제1항의 여유자금 및 제2항의 우체국예금중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회계·기금 또는 우체국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제9조 (재정차관자금의 운용) ①재정차관자금은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차관계정으로부터 용자계정으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범위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예정액에서 원리금상환예정액과 당해 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3.12.31〉

제12조 (지방채의 인수) ①이 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발행을 승인한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가 인수할 수 있는 지방채의 발행의 조건 및 그 인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정자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이 회계의 용자금·예탁금 및 예수

금의 금리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6.12.12, 1999.5.24>

②재정자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재정융자채권의 조기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 (예탁자금의 기한전 반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 예탁된 자금은 당해 회계·기금 또는 우체국예금사업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 회계총세출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의 구분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16조 (일시차입) ①이 회계는 지급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6.12.12>

제18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

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3982호, 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87회계연도 자금관리특별회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가 승계한다.

1. 차관자금계정과 청구권자금계정은 차관계정이 승계한다.
2.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은 융자계정이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본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②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법”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③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로 한다.

④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의 대충자금계정과 자금운용계정(이하 “자금관리특별회계”라 한다)”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이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동조제3항 및 제9조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⑥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10조제3항제1호중 “자금관리특별회계”를 각각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11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제5170호, 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6회계연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소속의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회계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승계된다.

②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199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재정투융자”를 각각 “재정융자”로 한다.

제3조제3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 한다.

②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융자”를 “출자 및 융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로사업과 관련된”을 “도로사업지원을 위한”으로, “출연 및 융자”를 “출자·출연 및 융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를 삭

제한다.

③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남북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⑥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및 제31조제3항제1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⑦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⑧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⑨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⑩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⑪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⑫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2조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각각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⑬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종자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

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6062호, 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사업”을 “우체국예금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재정융자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내지 <16> 생략